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04. 12. 10.

제출자: 구미시장

2004. 11. 20. 구미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재의요구 조항 :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제2조 제2항

제2조(정의) ② 「우수농수축산물」 이라 함은 우리지역(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제조·가공된 식품으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2. 이 유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4조에서 학교급식지원 대상을 “우리지역(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에만 지원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지역 농수축산물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는 “외국산품에 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상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3조 제4항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또한 우리지역(국내) 농수축산물 구입을 조건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은 WTO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제3조의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보조금지급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입니다.
- 따라서, 다자간 협상으로 조인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와 WTO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의 “내국민대우” 및 “보조금 금지”에 저촉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의 규정을 벗어난 위법한 조례안이라 할 것입니다.

붙임 : 1.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1부.
2. 참고자료 1부.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의요구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우수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② 「우수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우리지역(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제조·가공된 식품으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 규격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⑤ 「식재료 공급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① 구미시장은 구미교육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수농수축산물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유·초·중학교는 구미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초·중학교는 구미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시행계획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학교급식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부시장, 관련 국장 및 과장
2. 구미교육청 학무과장
3.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4. 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6. 그 외 관련단체 추천한 자

③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두되, 위원 중 호선한다.

④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 지원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2.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식재료검사 및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지도 감독
4.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

제9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공급자는 안전하고 신선하며,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내용에 따라 우수한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유·초·중학교 구미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과 관련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이의 부당 사례를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농수축산물 구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필요시 식재료공급자의 공급내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식재료 공급자가 제9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조사에 불응 할 경우, 구미시교육청 교육장에게 식재료 공급자 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